

의안번호	2201528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4. 07. 25.
추계번호	24A184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9억 8,400만원, 2030년에 26억 4,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39억원(연평균 27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340	—	—	340	—	680	136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2,644	2,644	2,644	2,644	2,644	13,221	2,644
추가재정소요	2,984	2,644	2,644	2,984	2,644	13,900	2,78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조(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2조(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선발·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4조(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중임 <table><tr><td>소관</td><td>세부사업(내역사업)</td><td>2022결산</td></tr><tr><td>중소벤처기업부</td><td>상권활성화 (종합계획 후속조치)</td><td>400백만원</td></tr></table>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22결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후속조치)	400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22결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후속조치)	400백만원							
2	안 제5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	-						
3	안 제6조(실태조사)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table><tr><td>소관</td><td>세부사업(내역사업)</td><td>2024예산</td></tr><tr><td>중소벤처기업부</td><td>소상공인성장지원 (실태조사)</td><td>700백만원</td></tr></table>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의 내역사업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24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실태조사)	700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24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실태조사)	700백만원							
4	안 제8조(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2조(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24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상권활성화)	24,857백만원
			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권활성화사업(자율)(4154-305)의 내역사업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24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동네상권발전소)	1,000백만원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의 내역사업					
6	안 제14조(사업평가)	×	○사·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과 평가의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 단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추계함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 [참고자료] 중소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중기사업계획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 수) 전국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별 기본계

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¹⁾,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려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²⁾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비용)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2,000만원으로 가정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을 참고

－ 본 추계에서 참고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현황

- ①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업예산: 2,195만원
- ②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업예산: 1,950만원
- ③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업예산: 1,800만원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주기의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 3억 4,000만원, 2029년 3억 4,000만원 등 5년간 총 6억 8,000만원으로 추계

[표 2]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방자치단체 수(A, 개)	17	－	－	17	－	－
기본계획 수립 단가(B, 백만원)	20	－	－	20	－	－
기본계획의 수립(C=A×B, 백만원)	340	－	－	340	－	6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안 제5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려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위원의 수)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평균과 민간위원 비율(63.0%)³⁾을 고려하여 전체 22명의 위원 중 13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개최일수) 위원회는 연간 3회 개최하는 것으로⁴⁾ 가정
- (수당 단가)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위원 1인·회의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
- (개수) 전국의 226개⁶⁾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가정

□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32억 2,100만원(연평균 26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30년

	2026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민간위원수(A, 명)	13	13	13	13	13	65	13
연간 개최일수(B, 회)	3	3	3	3	3	15	3
위원수당(C, 만원)	30	30	30	30	30	150	30
지방자치단체 수(D, 개)	226	226	226	226	226	—	—
합 계 (E=A×B×C×D, 백만원)	2,644	2,644	2,644	2,644	2,644	13,221	2,6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일부추계)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9억 8,400만원, 2030년에 26억 4,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39억원(연평균 27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조사(23년 4분기)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조사(23년 4분기) 본회의 평균 개최 횟수는 3회

5)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6)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22.12.31.기준)」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340	—	—	340	—	680	136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2,644	2,644	2,644	2,644	2,644	13,221	2,644
추가재정소요	2,984	2,644	2,644	2,984	2,644	13,900	2,78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assembly.go.kr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중기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제정안 (조항)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안 제4조 (종합계획 의 수립)	소상공인성장지원 (지역상권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	-	200	-	-	200
안 제6조 (실태조사)	소상공인성장지원 (지역상권역량강화 -지역상권 실태조사)	700	700	700	700	700
안 제12조 (지원사업)	상권활성화 자율 (상권활성화)	24,857	26,591	28,184	29,925	32,760
안 제12조 (지원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 (지역상권역량강화 -동네상권발전소)	1,000	2,000	3,000	3,000	3,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